

## 발전기금추진위원회 규정

제정 2021. 01. 22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고 한다)의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발전기금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위원회에 관하여 정관, 학칙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의 발전기금 모금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발전기금 유치 및 재정 기여에 관한 사항
3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**제4조(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협력부총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동문 및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**제6조(보고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간사의 서명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,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상지대학교 또는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관계부서의 협조)** 위원회는 교직원 및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행정지원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교직원 및 관계 부서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간사 및 서기)** 위원회는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에서 주관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

**제9조(경비지급)**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획평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2021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